

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

[2017년 양도분]

□ 주요 변경 사항

○ 세법개정*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합산하여 과세대상 산정

구분	기존	변경
변경	국내 / 해외 개별 산정 (기본공제 각각 250만원)	국내 / 해외 합산 산정 (기본공제 합산 250만원)
예시	국내 : 500만원 수익 해외 : 600만원 손실 과세 대상 : 국내 250만원	국내 : 500만원 수익 해외 : 600만원 손실 과세 대상 : 없음

○ 세법개정*에 따라 2018년도 4월1일 양도분부터 세율 인상
(2017년 양도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5% 적용)

(만원)

구분	양도차익		세액계산
	1분기	2~4분기	
1	350	400	$\{(350-250) \times 5\% + (400 \times 10\%) = 45$
2	100	300	$(100-100) + \{(300-150) \times 10\% = 15$
3	600	△ 150	$(600-150-250) \times 5\% = 10$
4	△ 150	600	$(600-150-250) \times 10\% = 20$
5	△ 150	△ 100	0

□ 개정된 「파생상품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」 로 신고안내

○ 세법개정*에 따라 올해 5월 확정신고 안내시 「파생상품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」 는 개정서식으로 출력 제공

- 국내·외 파생상품 양도 거래내역을 한 서식으로 작성

* 국내·외 파생상품 양도소득 구분 계산 → 소득 통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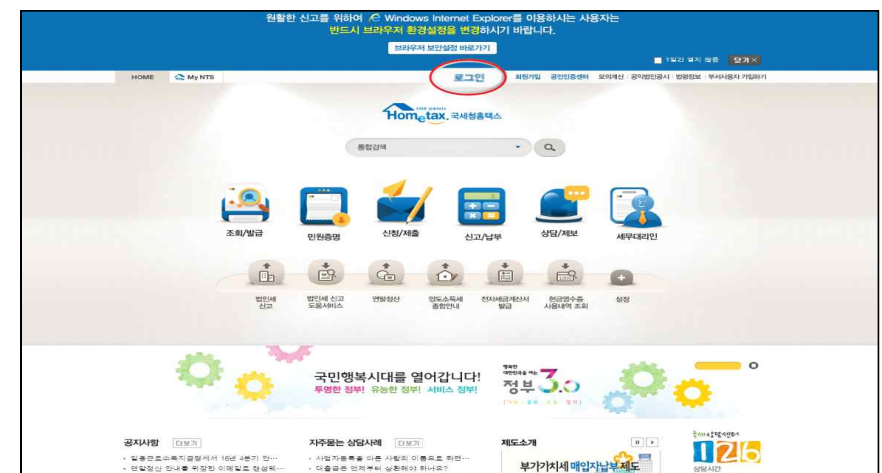
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안내

- 신고대상 : 2017년 파생상품 양도분
- 신고·납부기간 : 2018.5.1.~2018.5.31.
- 전자신고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- 상담전화 : 국번없이 126번
- 신고·납부방법 : 「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*」 참조

* 홈택스 > 자료실(화면하단 가운데) > 검색창에서 '파생상품'으로 검색

국세청 홈택스 신고 방법

□ 홈페이지 > 로그인 > 신고납부



□ 양도소득세 > 확정신고 작성

□ 기본정보입력 > 계산명세서 조회

※ 주식워런트증권 장외거래(계좌이체) 해당여부는 **세부내역 다운로드** 에서 확인

□ 수정(추가, 삭제)하기 > 양도소득세 계산 및 저장

- * 수정사항이 필요 없는 경우 바로 “등록하기” 진행
- 신고된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를 진행한 경우 차후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,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신고서 제출 > 세금 납부

참고 4

관련 서식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2]

(앞 쪽)

관리번호 -

과세대상연도 년

*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.

파생상품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②세울 구분코드 (신설)	종목				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			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			⑬양도소득금액	
	③국내/외 (신설)	④파생상품 유형	⑤증권사 등	⑥계좌번호	⑦매도수량	⑧매도가액	⑨수수료 등	⑩매수수량	⑪매수가액	⑫수수료 등		
합계												

297mm×210mm(백상지 80g/㎡)

(뒤 쪽)

작성 방법

1.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[]란은 적지 않습니다.
2. ①과세대상연도란: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.
3. ② 세율구분코드란 :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.

양도일	2016.1.1.~2018.3.31.	2018.4.1. 이후
세율	5%	10%
코드	80	81

4. ③국내/외란 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'국내'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'국외'로 적습니다.
5. ④파생상품 유형란: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, 콜옵션, 풋옵션, 콜 주식워런트증권, 풋 주식워런트증권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.
6. ⑤증권사 등란: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7. ⑥계좌번호란: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8.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량란: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.
9. ⑧매도가액란: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.
10. ⑨ 및 ⑫수수료 등란: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)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.
11. ⑪매수가액란: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.
12. ⑬양도소득금액란: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(⑥ - ⑨ - ⑪ - ⑫)을 적습니다.